

참고 1

한-GCC 교역 및 투자 현황

□ (무역) '22년 교역액은 1,026억 불로, 전년 대비 60% 증가하였으며, 對 GCC 무역수지는 약 820억 불 적자

< 우리나라의 對 GCC 연도별 교역 현황(단위: 백만불, 전년 동기 대비 %) >

구분	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
수출	금액	18,284	14,251	13,065	11,191	9,418	8,949	8,639	10,260
	증가율	△7.8	△22.1	△8.3	△14.3	△15.8	△5.0	△3.5	18.7
수입	금액	57,011	42,642	52,736	68,044	57,795	37,658	55,133	92,323
	증가율	△43.4	△25.2	23.7	29.0	△15.1	△34.8	46.4	67.5
무역규모		75,295	56,893	65,801	79,235	67,213	46,607	63,772	102,583
무역수지		△38,728	△28,392	△39,671	△56,853	△48,377	△28,709	△46,494	△82,063

< 2022년 한·GCC 품목별 교역현황(백만불), MTI 4단위 >

순위	수출			수입		
	품목명	금액	비중	품목명	금액	비중
1	승용차(7411)	1,733	16.9	원유(1310)	62,917	68.1
2	무기류(9701)	584	5.7	천연가스(1340)	13,808	15.0
3	자동차부품(7420)	423	4.1	나프타(1334)	10,188	11.0
4	선박(7461)	407	4.0	알루미늄괴및스크랩(6211)	1,123	1.2
5	합성수지(2140)	372	3.6	중유(1335)	947	1.0
6	접속기 및 차단기(8413)	257	2.5	암모니아수(2282)	592	0.6
7	타이어(3203)	252	2.5	동괴및스크랩(6221)	405	0.4
8	건설중장비(7251)	243	2.4	LPG(1350)	313	0.3
9	기타석유화학제품(2190)	224	2.2	기타석유화학제품(2190)	302	0.3
10	철강관(6141)	204	2.0	질소비료(2310)	218	0.2
10대품목 합		4,699	45.9	10대품목 합	90,813	98.1
전체		10,260	100	전체	92,323	100

□ (투자) '22년 누계 기준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는 약 186억 불로 對 GCC 투자는 114.8억 불, 對 한국 투자는 72.8억 불 수준

< 한국의 對GCC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: 건, 백만불)

구분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총계
건수	247	201	193	148	139	96	100	114	3,509
금액	1,594	1,037	782	840	695	808	187	175	11,485

*자료: 한국수출입은행, '80년도-'22년 누적값

< GCC의 對韓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: 건, 백만불)

구분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총계
건수	20	18	15	14	13	15	23	19	344
금액	1,373	138	1,014	559	728	510	538	201	7,284

참고 2

「한-GCC FTA」 협상 추진 경과

- '08.7월, 1차 협상 개시 후 '09년까지 3차례 공식협상* 진행
 - * 1차 협상('08.7월, 서울), 2차('09.3월, 리야드), 3차('09.7월, 서울)
 - 상품 양허 관련 각각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또는 장기 철폐
 - 수입액 기준 양측 자유화율 불균형 문제 지속(우리99.3%, GCC67.3%)
 - * 우리 원유는 10년 철폐했으나, 석유화학합성원료·수산물(새우·꽃게 등) 제외
 - * GCC 승용차, 자동차부품, 철강제품, 가정용전자제품(냉장고, 에어컨 등) 제외
 - '10.1월 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협상 중단 선언
 - * GCC측은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자동차·부품·가전제품 등 주요 제조업 품목의 양허 제외를 요구하며 협상 재개 전, 서면 입장 제시를 요구
 - * GCC 핵심 국가인 사우디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 중이며 GCC-일본 FTA도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로 교착 상태에서 '10년 협상 중단
- '20.12월 GCC 6개국 장관회의에서 '25년까지의 FTA 협상 계획 수립
 - * 영국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, 중국, 파키스탄, 한국 등 우선 추진 결정
- '22.1월 한-GCC FTA 협상 공식 재개 발표
 - '22.3월 제4차 협상부터 총 5차례 공식협상* 개최
 - * 4차('22.3월, 서울), 5차(6월, 리야드), 6차(10월, 서울), 7차('23.2월, 리야드), 8차(10월, 서울)
 - '23.11월 화상 회기간회의 및 '23.12월 수석대표회의 개최

참고 3

상품 관련 주요 내용 및 의의

1. 상품 양허

※ 양측 HS 세번 기준, 표시 차이로 HS 세번 조정시 향후 자유화 수준 미세 변경 가능

□ **[자유화 수준]** 양측은 관세 즉시철폐, 5년철폐, 10년철폐, 15년철폐, 20년철폐 5가지 카테고리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

○ **우리측 자유화 수준: 품목수 기준 89.9%, 수입액 기준 20.7(+10.2)%**

※ 양측은 관세철폐 외 관세감축 카테고리도 포함(괄호 수치는 관세감축 품목 비율)

(단위: 개, 백만불)

카테고리	품목수	비중	수입액 (19~21)	비중	주요 품목
즉시 철폐	9,667	79.0%	1,114	2.2%	
무세	2,399	19.6%	756	1.5%	동괴및스크랩, 선박, 알루미늄괴및스크랩
유세	7,268	59.4%	357	0.7%	암모니아수, 헬륨, 질소비료, 합금철
5년 철폐	750	6.1%	139	0.3%	LPG(프로판, 부탄), 빵, 기타정밀화학제품, 안료
10년 철폐	164	1.3%	1,129	2.2%	방카C유, 알루미늄괴/판, 메탄올, 질소비료, 안전유리
10년 내 철폐(소계)	10,581	86.4%	2,382	4.7%	
15년 철폐	333	2.7%	8,027	16.0%	천연가스(LNG), 홍차, 연괴, 알루미늄선/분, 백시멘트
20년 철폐	98	0.8%	1	0.0%	대추야자, 눈다랑어, 어육, 크실렌, 화강암,
20년 내 철폐(소계)	11,012	89.9%	10,410	20.7%	
관세 50% 감축	1	0.0%	5,114	10.2%	나프타
양허제외	1,229	10.0%	34,682	69.1%	원유, 폴리에틸렌-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, 휘발유-제트유 등 석유제품 일부, 갈치, 게, 새우, 정어리 등
총합계	12,242	100.0%	50,205	100.0%	

○ **GCC측 자유화 수준: 품목수 기준 76.4(+4.1)%, 수입액 기준 20.3(+3.0)%**

(단위: 개, 백만불)

카테고리	품목수	비중	수입액 (19~21)	비중	주요 품목
즉시 철폐	1,914	24.3%	387	5.3%	
무세	897	11.4%	361	4.9%	쌀, 종자류, 신선과일(배·포도·딸기 등), 분유, 화학기계(부품), 기초유분(기타/톨루엔), 벤젠
유세	1,017	12.9%	26	0.4%	인삼류, 라이플, 원자로부품, 천연고무, 멜라민수지
5년 철폐	746	9.5%	93	1.3%	무기류, 기타항공기부품, 합성고무(라텍스 등), 금속절삭가공기, 압연기부품, 인쇄용지
10년 철폐	961	12.2%	81	1.1%	의약품원료, 농약, 면류, 가열난방기(과열수보일러), 편직물, 합성수지(기타 비닐중합체) 등
10년 내 철폐(소계)	3,621	45.9%	562	7.7%	
15년 철폐	718	9.1%	176	2.4%	일부 승용차 엔진(가솔린·디젤), 무기류, 전기계측기, 빵, 선박용증기터빈, 선크림, 기타광학기기
20년 철폐	1,685	21.4%	748	10.2%	차체, 모터, 무기류(미사일), 초음파영상진단기, 타이어튜브(이너튜브), 자전거부품, 손목시계
20년 내 철폐(소계)	6,024	76.4%	1,486	20.3%	
관세 50% 감축	329	4.1%	224	3.0%	화장품(메이크업), 기타건설중장비(기타/불도저), 기타석유화학제품, 금속절삭가공기계, 운반 하역기계, 화학기계, 접시세척기
양허제외	1,526	19.4%	5,594	76.6%	전기/하이브리드 차 등 타이어(車용), 연산축전지, 변압기, 금지 식물성액즙, 씹는담배, 페타이어, 종교건강안보주류, 전자담배, 돼지고기
총합계	7,879	100.0%	7,305	100.0%	

☞ 양측 모두 품목수 기준 20년내 관세 철폐 · 관세감축 80% 이상 확보

□ [GCC 양허 특징]

○ (주력수출품목) 자동차·부품, 기계류(밸브·증기터빈 등) 및 화학제품(합성수지·정밀화학 등)에서 상당수 관세 철폐, 대부분 무기류 관세 철폐

① (자동차) 일부 승용차·화물차 등 양허 → 완성차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로 중동지역 자동차 수출 증대 기대

▲승용차(1000cc초과 1500cc이하(일부)20년/ 1500cc초과 3000cc이하(일부)15년/ 3000cc초과(일부)15,20년), ▲화물자동차(5~20년철폐), ▲응급용차량(15년 철폐~50% 감축), ▲골프용차량(20년 철폐)

② (자동차 부품) 내연차·전기차 핵심 부품 관세철폐·감축 → 현지 진출 기업*의 내연차·친환경차 조립 생산 지원, 높은 기온으로 부품 교체주기가 짧은 중동지역**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 활성화 기대

* '23.10월 정상 사우디 순방 계기 체결된 합작 투자계약 등 우리 업계 현지 진출 활성화

** 사우디 국토는 대부분 사막지대로 모래, 먼지폭풍이 심하며 고온으로 자동차 부품에 변형이 생길 확률이 높아 자동차 부품 교체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('21, KOTRA)

▲차체(10~20년 철폐), ▲엔진(가솔린:15~20년철폐, 디젤:15년철폐), ▲새시(20년 철폐), ▲전기차 배터리(50% 관세감축), ▲전기차용 모터(20년 철폐), ▲부품용 모터(20년 철폐)

③ (무기류) 로켓발사기·미사일 포함 무기류 대부분 양허 → 방산 수요가 높은 중동*으로 무기수출 상승세**를 이어가 방산 선진국 도약 기대

* '18-'22년 세계 무기 수입 상위 10개국에 사우디(2위), 카타르(3위) 포함 (인도 1위)(2023 SIPRI)

** 우리 對사우디 무기수출(MTI 2 기준, 무협) : '19년(51백만불)→'22년(316백만불)

▲로켓발사기(5년철폐) ▲미사일(20년철폐) ▲권총(즉시철폐) ▲탄약(10년~20년철폐) ▲검류(15년철폐), ▲박격포·평사포·곡사포(즉시철폐), ▲전차·장갑차(20년철폐), ▲무기류부품(과반수 5년 철폐) 등 → 총 22개 중 1개 품목(산탄총,공기총,헌팅·스포츠용을 제외한 탄약 및 부분품) 제외, 모두 철폐(감축1)

④ (기계류) 다양한 소재의 가공·포장·운반 등 용도별 기계 및 부품류 관세철폐·감축→ 중동 내 인프라 확장세를 타고 수출 증가 기대

* '23.上 對중동 일반기계 수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대비 24.3%로 지역별 수출 중 가장 높은 수준(산업부 '23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)

▲가열 등 화학기계(즉시~20년 철폐/50%감축), ▲금속절삭·가공기계(즉시~20년철폐/50%감축(1)), ▲고무·플라스틱 압출기(20년철폐), ▲증기터빈(15~20년철폐), ▲운반하역기계(20년철폐~50%감축)

⑤ (화학제품) 합성수지·정밀화학·기타화학공업 제품 및 원료 다수 양허

▲염화비닐(20년철폐), ▲무수프탈산(20년철폐), ▲고무·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(15년철폐), ▲나프탈렌(20년철폐), ▲소독제(20년철폐), ▲질산·황질산·초산 등(20년철폐)

○ **(수출유망품목)** 화장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등에서 다수 관세철폐

① **(화장품)** 메이크업 및 세안용품 등 양허 → K-드라마, K-POP 영향으로 K-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동 지역에 화장품 수출 증가* 가속화 기대

* 최근 5개년('18-'22)간 對GCC 화장품 수출 지속 증가세
우리 對GCC 화장품수출(MTI 4 기준, 무협) : '18년(27백만불) → '22년(98백만불)

▲썬크림(15년 철폐), ▲피부메이크업제품(20년철폐), ▲아이메이크업제품(50%감축), ▲립메이크업제품(50%감축) ▲세안용품·메이크업리무버(20년철폐) 등

② **(의약품·의료기기)** 의약품 원료·성분, 진단·측정기기 등 양허 → 의료 산업이 공동화*된 중동지역에 우리 의약품, 의료기기 수출 확대 기대

* 사우디는 의료기기 제조업의 공동화로 총 수요의 90%를 수입에 의존(코트라)

** 우리 의료기기는 최근 3개년('20-'22) 무역수지 흑자 기록, 향후 5년간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원까지 증대하고,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분야 지원 예정

■의약품 (과반수 10년내 철폐): ▲소염·진통성분(10년철폐), ▲진통·해열제 원료(10년철폐), ▲단백질분해효소(5년철폐) 등

■의료용 기기 및 전자기기 (과반수 15년내 철폐): ▲초음파영상진단기(20년철폐), ▲혈중산소 측정장치(20년철폐), ▲주사기(5~15년철폐), ▲심전계(15년철폐), ▲인공관절(10년철폐) 등

○ **(농축수산물)** [※]쇠고기·인삼류·참깨·조제식품, [※]김·참치·어묵·굴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철폐 확보

→ 기존 무세수출품목(쌀, 종자류, 분유, 새우 등) 이외 품목에서 쇠고기*, 김** 등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對중동 식품 교역의 지평 확대

* 홍콩, 말련 등 아시아 지역 한우 수출 지속 증가세('23.11월 기준, 작년 대비 28.7% 증가한 3.2백만불 기록), 중동지역으로도 한우 수출 확대 기대(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)

** 김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출 8%가 증가하여 '23년 김 수출 1조원 달성, 美, 中, 日 등 수출 시장 이외 중동, 남미 등 신시장 개척 중으로 중동시장 진출 발판 마련

▲쇠고기(15개 중 13개품목 즉시~20년철폐), ▲인삼류(즉시~20년철폐) · 인삼음료(15년철폐), ▲참깨(즉시철폐), ▲음료베이스(과반수 즉시~5년철폐) · 빵제조용재료(과반수 즉시~10년철폐), ▲굴(10~20년철폐), ▲김(15년철폐), ▲조미김(20년철폐), ▲냉동참치(5년철폐), ▲어묵(20년철폐) 등

※ **GCC측 금지·특별관심 품목** (품목수 1.4%, 수입액 0.0%)

◆ GCC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(Prohibited) 및 특별관심품목(Special Goods)을 운영

▲(금지품목) 씹는담배, 산동물, 상아, 마약류, 석면제품, 페타이어 등

▲(특별관심품목) 전자담배,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(유지 등), 주류 및 주류포함식품

- 일반담배는 금지·특별관심품목은 아니나, 관세 100%로 운영(GCC측 일반담배 미양허)

□ [우리 양허 특징]

- **(공산품)** 천연가스·석유제품·알루미늄 등 GCC 주력 생산품 관세철폐 (단, 원유는 양허제외)

① 벙커 C-유 등 석유제품·가스류 양허로 에너지 수입공급망 강화 추진 및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원가 지원

- * 우리 전체 수입액 중 **LNG 비중은 15.9%** (우리 對세계 수입액 대비 GCC수입 38.7%)
- 우리 전체 수입액 중 **LPG(프로판, 부탄) 비중은 0.23%**
- 우리 전체 수입액 중 **벙커C유 비중은 0.67%**

▲**주요 석유제품(중유·유탄유·벙커씨유 등)** (3~8%관세, 10~15년 철폐)

- * 석유제품 중 휘발유·제트유 양허제외
- ** 폴리에틸렌, 폴리프로필렌(6.5%관세)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은 양허제외

▲**가스류(LPG, LNG)** (LPG: 3%관세, 5년철폐 / LNG: 3%관세, 15년철폐)

▲**알루미늄제품(알루미늄과·알루미늄선·알루미늄분 전품목)** (1-8%관세, 즉시~15년 철폐)

② GCC産 원유(3%관세)는 양측 수입액 기준 양허율 균형을 위해 미양허

- * 우리 전체 수입액 중 **원유 비중은 68.1%**(관세 철폐시 수입액 기준 우리 양허율은 88.8%)

③ 나프타(0.5%관세) 역시 양측 수입액 기준 양허율 균형을 위해 미양허, 단, 국내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해 50% 관세감축(발효시 즉시)

- * 우리 전체 수입액 중 **나프타 비중은 10.2%**(관세 철폐시 수입액 기준 우리 양허율은 30.9%)

- **(농축수산물)** 대추야자, 홍차, 빵, 식물성 기름, 어류 기름 등 농수산물, 농수산 가공식품에 대해 관세철폐

→ 대부분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, 소비자 선택권 확대

▲**대추야자**(20년 철폐), ▲**홍차**(15년 철폐), ▲**빵**(5년철폐), ▲**어류 기름**(5년철폐),
▲**대두유·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유지**(대부분 양허, 즉시~15년 철폐)

2. 상품 협정문

① 주요 결과

- **(관세 현행동결)** 양허 품목 뿐만 아니라 양허제외 품목에서도 추후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에 합의 추진
- **(수출입 제한)** 수출제한의 범위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, 수출제한 채택 전 서면통보 및 요청시 협의기회 제공
- **(통관)** 상호 국내법 범위 내에서 일시반입 상품의 면세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상용건품의 무관세 반입을 보장
- **(수입허가)** 수입허가와 관련된 각국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와 함께 WTO 수입허가협정 대비 강화된 통보의무*를 규정
 - * 가능한 범위 내 신규 절차 및 변경사항을 최소 20일 전 공표할 의무
- **(이행)** 위원회 기능에 ▲비관세조치 등 무역장벽 논의, ▲HS코드 개정에 따른 신속한 양허표 업데이트 실시 근거 등을 포함
- **(무역구제)** 관세 철폐·인하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, 덤핑 피해 해소를 위한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WTO 협정 수준 규범 마련

② 기대 효과

- **(관세 현행동결)** 양허제외 품목*에 대해서도 GCC가 현재 부과 중인 5% 이상으로 관세 인상을 금지하여 교역의 불확실성을 완화
 - * GCC측은 양허제외 품목 대부분 5% 대외공동관세 부과중(금지·특별품목 및 담배 제외), 단 회원국간 합의하에 개별 회원국이 개별관세 부과 가능
- 관세 현행동결 부재시, 향후 GCC측이 관세를 WTO 양허세율 수준*까지 인상할 경우** 상향된 세율이 적용

- GCC측 WTO 양허세율은 회원국별·품목별로 상이하나, 대략 6.5~100%까지 존재
- 사우디는 최근('20년, '22년) 자국산업 보호·육성 목적으로 섬유, 직물, 철도·항공기부품 등 6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최대 25%까지 인상 (美 상무부)

- **(수출제한)** GCC측이 수출제한을 채택하는 경우, 사전통보 및 협의 규정을 원용하여 우리 공급망 교란 완화·극복에 기여 기대
- **(통관·이행)** 일시반입 상품의 면세요건을 명시하여 교역의 예측 가능성을 증진하고, 상품위원회를 통해 협정의 원활한 이행 담보
- **(무역구제)** FTA 발효 후 급격한 수입 증가나 반덤핑에 따른 피해 해소 기반 마련, 동시에 GCC측의 자의적인 세이프가드·반덤핑 조치 부과 방지

3. 원산지

① (농축수산물) 우리 민감성을 반영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설정

- (신선 농수산물) 국내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* 설정 (※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은 역내 사육 요구)

* 원칙적으로 생산품의 수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었을 때 원산지로 인정

- (가공 식품) 우리측의 수출 잠재력을 감안하여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하되, 주원료는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요건 부과

- (김 조제품) 국내 수산업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해 김 조제품 (조미김, 김부각 등)은 국내산 김 사용시에만 원산지 인정

* 김은 '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, '22년 김 단일 품목으로 수출 1억 불 달성 기업 탄생

- (홍삼류) 홍삼을 활용한 건강식품은 원료인 홍삼을 국내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

- (치즈, 조제분유)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치즈 등 낙농품 및 조제분유 생산시 역외산 원유·재료만 사용할 경우 원산지 인정

☞ 원재료를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물은 역외산으로 쉽게 인정되어 對GCC 수출 유리

☞ 기후조건상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GCC는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 對한국 수출 제한

② (공산품)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

- (누적기준)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활용하여 최종재 생산시, 상대국 원산지 재료(GCC산)를 최종재 생산국 재료(한국산)로 간주*

* FTA 체결국 간 중간재 활용을 장려하고 FTA 공급망 강화 목적

- 원재료의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은 유가 변동에 따라 원산지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바,
- 누적 조항 활용시 GCC산 원유를 국내산으로 간주하여 우리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인 원산지 인정 가능
- * 원유 양허 여부와 무관히 누적 기준 활용 가능
- **(미소기준)** 비원산지 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, 원산지 기준(세번변경 기준)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
 - (일반 제품)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재의 10% 이하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
 - (섬유 제품) 고가 소재의 사용으로 가격 기준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해서 중량 기준도 추가하여 업계의 선택지 확대
- **(품목별 원산지 기준)** 자동차·기계류·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은 해외 원자재 조달, 글로벌 소싱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 마련
 - (자동차·기계류 등) 승용차·화물차, 건설중장비·밸브, 탄약류 등은 기체결 FTA 대비 간단하고 유연한 원산지 기준 반영
 - * 4단위 세번변경(CTH) 또는 역내부가가치(RVC) 40% 이상
 - (예) 한-EU FTA는 승용차, 건설중장비, 탄약 등에 대해 역내산 비중 50-55% 이상 요구
 - (화장품·의약품 등) 해외에서 조달된 원료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* 반영
 - * 6단위 세번변경(CTSH) 또는 역내부가가치(RVC) 40% 이상

- ☞ 우리가 수출 우세에 있는 공산품은 FTA를 통해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외산 비중도 유연하게 인정
- ☞ 한편, 누적 기준을 통해 한국 및 GCC 6개국 간 FTA 공급망 안정화 및 연계 심화 도모

1. 서비스 양허

- 한-GCC FTA를 통해 WTO 대비 GCC 6개국*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확대
 - * 우리측은 단일 서비스 양허, GCC측은 GCC 6개국 개별 서비스 양허 작성
- 우리측 관심분야인 영화, 의료 등에서 WTO GATS 대비 개방 수준 제고 및 서비스 공급자(기업인 등)*의 입국 및 일시체류 조건 개선
 - * 상용방문자(BV): 기업설립 관련자나 서비스 판매자(서비스 공급 협상·계약 목적 방문) 기업내전근자(ICT): 본사에서 현지설립 기업에 파견되는 임원, 고위관리자, 전문가 계약서비스공급자(CSS): 법인 소속으로, 법인 간 서비스공급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
- GCC측 관심분야인 운송 부수 서비스, 연료 소매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우리측은 한-베 FTA 등 우리 기체결 수준으로 개방
- 개방분야에 대해서는 GCC 국내법 제·개정을 통해 개방 수준을 후퇴할 수 없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안정성 확보
- **GCC측 개방 주요내용**
 - **(입국 및 일시체류)**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를 규정하고, GATS 대비 입국 및 일시체류 조건 개선*
 - * (UAE) ICT 개선(1년(갱신가능, 최대 3년) → 3년(갱신가능)), CSS(90일) 허용 (카타르) BV(90일) 허용, (쿠웨이트) BV(1개월, 최대 12개월) 허용 (바레인) BV(90일), ICT(2년, 갱신가능), CSS(180일), 설치 및 보수 기술자(180일) 허용
 - 법인 설립을 위해 입국하거나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임원 등의 체류기간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중동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완화 기대
 - 바레인은 우리 기업이 판매한 기계의 설치·보수를 위한 기술자의 입국 및 체류를 보장하여 중장비 기계 및 산업설비 수출 확대 기대
 - **(의료 서비스)** 병원 현지개원 및 중동 환자 유치 등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한국 의료기관 중동진출 및 경쟁력 강화 기대
 - * 운영컨설팅,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: UAE 6건, 카타르 5건, 쿠웨이트 1건, 사우디아라비아 1건(2022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, 한국보건산업진흥원)

- 특히, 카타르는 병원 서비스를 FTA 최초로 개방, 바레인은 기체결 FTA 최고 수준 개방

○ **(영화 서비스)** 우리 배급사의 중동지역 법인 설립을 통한 한국영화 공급 기반이 마련되어 K-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특히 카타르, 바레인은 영화 배급 서비스를 FTA 최초로 개방

○ **(외국법자문 서비스)** GATS 대비 카타르, 바레인 서비스 개방, 사우디 현지로펌 설립 시 지분제한 삭제 등으로 법률시장 진출 기회 확대

○ **(건설 서비스)** GATS 대비 바레인·카타르의 건설(건설현장 사전작업)·엔지니어링·도시계획 등 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우리 건설·플랜트 기업의 경쟁력 확보

□ **(우리측 개방 주요내용)**

○ **(연료 소매 서비스)** GCC 관심 분야인 연료 소매 서비스를 우리측 기체결 FTA 수준으로 개방

○ **(운송 부수 서비스)** 기체결 FTA 수준으로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 및 해상 화물운송주선, 해운중개, 선박 유지·보수 서비스 개방

2. 서비스 협정문

□ 국내규제 관련 WTO JSI 발효 시 JSI 참여국* 간에는 해당 규범이 바로 적용되며, WTO 대비 시장 개방이 확대된 분야에도 적용되도록 규정

* 대한민국, 사우디아라비아, UAE, 바레인

○ 면허, 자격 승인절차 시 진행상황 및 결과 통보, 부당한 절차 지연 금지 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

3. 평가 및 기대 효과

- **(평가)** 우리측 관심분야인 영화, 의료 등의 분야에서 WTO GATS 대비 높은 수준으로 GCC 서비스 시장 개방
- **(기대 효과)** GCC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, 영화 등 K-콘텐츠 확산 및 의료기관 진출 활성화 기대

□ [주요 내용]

- (비차별 대우) 디지털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의무 약속으로 K-콘텐츠 수출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진출 확대 기대
- (정보 이전)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으로 GCC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*를 이전 및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혁신 가능

* 예시) GCC에 진출한 우리 유통 기업이 현지에서 수집한 GCC 소비자의 취향, 소비 패턴 등을 국내 본사가 공유 받아 이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, 상품·부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

- (전자상거래 촉진) 전자 서명·전자 인증의 상호운용성 제고, 전자결제 촉진 등을 통해 현지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의 온라인 판매 증가 기대

* GCC 지역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25년까지 연평균 10% 이상 성장률과 함께 매출액이 150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('23년 320억불 → '25년 500억불)

- 또한,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행정문서의 전자적 제출이 인정되어 물류 비용 절감, 통관시간 소요 단축 등 효율성 향상 기대

- (협력) 중소·스타트업, AI 등 한-GCC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기대

- (중소·스타트업) 온라인 공급망 연결 촉진,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환을 통해 중소·스타트업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노력

- (AI)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이니셔티브, 규제 및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

□ [의의]

- 디지털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 및 전자상거래 촉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 시장 내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기대

1. 일반 협력

- (주요 내용) 에너지·자원, 바이오경제, 스마트팜, 헬스케어 등 新통상의제를 포함한 12개 분야*에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 마련
 - * 에너지·자원, 기업방문, ICT, 과학기술, 보건산업, 농·임·수산업, 건설·인프라, 바이오경제, 스마트팜, 시청각서비스, 항공서비스, 첨단산업
- (에너지·자원) GCC측은 자국 FTA 최초로 대체·신재생에너지 및 공급 안정화 등 에너지·자원 협력을 본문 및 부속서로 포함
- (스마트팜) 우리측 유망 분야이자 GCC측 주요 관심 분야로서, 우리 기체결 FTA에 포함된 농업협력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협력 기반 구축
- (바이오경제) 바이오경제* 관련 공급망협력 강화, 인력교류,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바이오분야 경제협력을 GCC측 최초로 포함
 - * 바이오의약품, 바이오화학·에너지, 바이오환경·의학용품, 바이오기구, 바이오자원 등
- (보건산업) 공공의료정책·관리, 병원·디지털 헬스케어, 보건 관련 신기술 등 분야에서의 인력양성, 상호 접근성 향상 등 협력 증진
- (첨단산업) AI·스마트기술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(R&D) 및 합작기업 설립, 신산업정책의 공동개발, 모범사례의 교환·공유 등

2. 중소기업 협력

- (주요 내용)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챕터를 구성, 중소기업의 특성 및 유망분야를 반영한 협력 기반 등 명시
- (정보 공유) 정보 플랫폼(웹사이트 등)을 통한 중소기업 관련 지식·경험·모범사례 및 관련 법·제도 등 정보의 공유
- (협력 분야) 글로벌가치사슬(GVC) 참여 증진, 시장접근 개선, 전자상거래 촉진, 정보교류 프로그램 시행, 역량 배양 및 기술 혁신 등

1. 정부조달

① 주요 결과

- (적용범위) 우리나라와 GCC 회원국 중 UAE·바레인 2개국 참여
- (협정문) WTO 정부조달협정(GPA) 수준으로 비차별·투명성 원칙 합의
 - * UAE·바레인 모두 WTO GPA 비가입국
 - (주요 원칙) 한국 공급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조달 계약과 무관한 추가 조건 요구(대응구매) 금지*
 - * 부속서 상 예외로 명시한 대응구매요건 이외 다른 대응구매요건 요구 금지 효과
 - 공급자 참가 자격으로 과거 낙찰실적 또는 사전업무 경험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
 - (절차적 투명성) 각국 조달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개별 조달 공고*가 온라인·서면 단일창구를 통해 무료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
 - * 각국은 연간 조달 계획을 예상 일정과 함께 가능한 조속히 공개하도록 장려
 - 조달기관이 공고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* 및 공급자가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
 - * 조달기관의 명칭·주소,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조달 관련 모든 문서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관련 비용, 조달될 물품·서비스의 성격과 수량 등
 - 양허한 조달절차(공고, 입찰서류 제출 등)는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 노력
- (시장 개방) 참여국 모두 우리측 기체결 수준으로 개방
 - * 조달시장 개방의 의의: 양허기관이 조달 계약 추진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,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여건 개선
 - (양허 기관) 바레인과는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을 상호 개방했고, UAE와는 중앙정부 기관만 상호 개방 (한-UAE CEPA와 동일)

- 우리측은 기체결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(중앙: 44개, 공공기관: 24개)
- 바레인측은 중앙정부 기관 28개, 공공기관 12개*를 개방했고, UAE측은 국내법상 양허 가능한** 모든 연방기관(27개) 개방

* 바레인 공공기관 예시 : 관광전시공사, 슈라의회(상원), 바레인 대학 등

** 디지털조달 플랫폼(DPP) 도입('22) 이후 동 플랫폼 활용 연방정부기관만 양허 가능

○ **(양허 하한선)** UAE·바레인의 양허 하한선을 낮게 합의하여 양국 조달 시장 개방범위 확대 효과

* (한국) 중앙정부 △상품·서비스 SDR 130,000(2.2억원), △건설서비스 SDR 5,000,000(83억원)
공공기관 △상품·서비스 SDR 400,000(6.7억원), △건설서비스 SDR 15,000,000(249억원)

* (UAE) △상품·서비스 SDR 130,000(2.2억원) (한-UAE CEPA+)

* (바레인) 중앙정부 △상품·서비스 SDR 140,000(2.36억원), △건설서비스 SDR 6,000,000(99.6억원)
공공기관 △상품·서비스 SDR 200,000(3.4억원), △건설서비스 SDR 7,500,000(125억원)

- (UAE) 한-UAE CEPA 포함 UAE측 기체결 FTA 대비 최저 수준으로, UAE측 조달시장 개방국 중 가장 광범위한 시장개방

* (한-UAE CEPA) △상품·서비스 SDR 134,000(2.6억원)

☞ **상품·서비스 2.2억원 이상의 UAE 조달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***

* UAE 기존 양허: (한-UAE) 2.26억원 이상, (GCC-EFTA) 2.5억원 이상

- (바레인) 공공기관 양허 하한선이 우리측 대비 절반 수준으로, 우리 기업의 바레인 공공기관 발주 조달 참여 기회 확대 기대

* (한국 공공기관) △상품·서비스 6.7억원 이상, △건설서비스 249억원 이상

* (바레인 공공기관) △상품·서비스 3.35억원 이상, △건설서비스 125억원 이상

☞ **△상품·서비스 3.35억원 이상, △건설서비스 125억원 이상의 바레인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**

○ **(양허 범위)** 기체결 수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(건설서비스 포함) 개방

	상품	서비스	건설서비스
한국	군수물품 제외 전체 개방	WTO 양허수준 개방	국내법상 중소기업 유보분 제외 개방
UAE	군수물품 등 제외 전체 개방	한-GCC FTA 서비스 양허와 동일하게 개방	한-GCC FTA 서비스 양허와 동일하게 개방
바레인	군수물품 등 제외 전체 개방	유지보수서비스 예외 등을 제외하고 전체 개방	종교건물 등 제외 전체 개방

- **(양허 예외)** 참여국 모두 자국법상 일부 예외 사항을 명시*
 - * UAE·바레인측이 당초 제시한 매우 광범위한 예외를 삭제하고 국내법상 일부 예외로 한정
 - 우리측은 기체결에 반영된 예외(중소기업 유보분, 농수산물 가격안정법, 급식 프로그램, 공항 조달)를 모두 명시
 - UAE측은 기체결과 유사하게 ICV* 제도, 중소기업 및 녹색공급자 10% 가격 우대, 건설 서비스·프로젝트 등을 제외
 - * UAE 현지화 정책으로서 현지 인력 고용, 현지 투자 등에 따라 점수 산정
 - 바레인측은 기체결과 유사하게 ICV 제도, 중소기업 10% 가격 우대, 급식 및 구호용 농산물 구매 등을 제외

2 평가 및 기대 효과

- WTO GPA 비당사국인 UAE·바레인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기업들의 UAE·바레인* 조달시장의 진출 확대 기반 마련**
 - * (바레인) 美('04), 싱('13), EFTA('14)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 조달시장 개방
 - ** 우리기업 對UAE·바레인 수주금액('23) : (UAE) 8.6억불 (바레인) 1.25억불(해외건설협회)
- 특히 UAE 조달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접근, 바레인 조달시장의 신규 개방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여건 개선 기대

2. 지재권

1 주요 결과

- 우리 기업 및 창작자들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GCC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 마련
- **(상표·디자인)** 한류를 통한 K-소비재 수출 증가세* 감안, 우리 기업의 상표·디자인 보호 강화 및 한류편승 행위 차단 위한 규정 도입
 - * 한국 화장품 對GCC 국가 수출금액(백만불) : '21년 79 → '22년 98 (24%↑)
 -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고자 악의적 상표 등록 취소 규정*
 - *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우리 기업의 상표를 선등록시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 요구 가능

- GCC 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기업 상표도 유명상표로서 보호 가능*
 - * 우리 기업의 상표가 GCC 국가 내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될 경우, 우리 기업 상표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기업 상표와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 등에 대해 조치 요구 가능
- GCC 내 미등록된 디자인(예: 화장품 용기 등)에 대해서도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현지 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대응 요구 가능
- **(저작권)** △저작권자 권리 보장, △기술보호조치* 우회 금지, △권리 관리정보** 보호 등 한류 콘텐츠 무단 복제·이용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
 - * 저작물의 불법복제(CD 복제 방지 등) 및 불법이용(암호화 조치 등) 막기 위한 기술조치
 - ** 저작권자 식별을 위한 로고 또는 워터마크 삭제 금지 등 보호 조치
- 불법 웹사이트 통한 K-드라마·영화 무단 배포 등 온라인상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의무를 규정, K-콘텐츠 보호 강화*
 - * 사우디·UAE·오만 등의 넷플릭스 TV쇼 부분에 한국 드라마가 10위 내 랭킹('22)
- **(집행)**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온라인 상의 지재권 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지재권 침해와 동일한 집행절차 적용 의무 확인*
 - *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는 상표·디자인 침해 상품에도 동일한 민형사절차 적용

② 평가 및 기대효과

- **(평가)** 최근 지재권 침해 행태를 고려하여 우리 창작자·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핵심적인 조항들을 제안하여 규정하는 성과 도출
- **(기대 효과)** GCC 역내에서 △우리 기업의 상표·디자인 보호 강화 통한 소비재 수출 증대, △한류 콘텐츠의 안정적 확산 기반 마련 기대